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08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6년 4월 7일
- 회 부 일 : 2016년 4월 12일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도록 수수료에 대한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의 면제 대상에 인용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제목을 변경함(안 제6조).

나.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감면 규정을 본 조례에 신설함(안 제6조제2항).

다.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라. 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가 삭제되고, 맞춤형 급여체계의 도입으로 같은 법 제7조(급여의 종류) 개별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수수료의 면제 대상자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원안동의)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협의완료(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6. 1.21. ~ 2016. 2. 11.)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 등 자료 : 미첨부 사유서 별첨

5. 검토 의견

가. 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정정보 수수료에 대한 감면 기준(100분의 50경감)을 명확히 하고(안 제6조제2항 신설), 수수료의 면제 대상에 인용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정비(안 제6조제1항제2호)하려는 것인바,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루고 법적 일체성·연계성을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상위법령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개정사항 (개정 2014.12.10, 시행 2014.12.1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문 공개 대상인 정보의 경우에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MB(메가바이트)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요개정사항(개정 2014.12.30, 시행 2015.7.1.)

◇ 개정이유

2000년 10월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중략...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고 빈곤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하게 되므로 현행 수급권자의 범위는 삭제하되,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규정은 별도로 규정함(현행 제5조 삭제, 제14조의2 신설).

나.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조문제목 변경(안 제6조)

- 안 제6조는 상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제목을 현행 “면제”에서 “감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 감면과 면제의 개념

- 감면 : 어떤 금액을 확정하기전에 정책적 배려로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써 감경과 면제를 포함함.
- 면제 : 감면의 종속개념으로써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신청”을 했을 때에 내지 않고, 반대로 신청이 없으면 세금(수수료)를 부과함.

다.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를 면제대상자 변경(안 제6조 제1항 제2호)

- 안 제6조제1항제2호는 상위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수수료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된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상위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인용규정 중 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를 법 제7조(급여의 종류)의 개별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규정으로 본 조례에 면제 대상자를 명확히 인용하고자 하는 것임.

라.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6조 제2항)

- 안 제6조제2항은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1)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1)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상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와도 배치 및 상충되지 않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면제) 생략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생략
<신 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별표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u> 2. <u>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u> 3. <u>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의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u>

- 다만, 개정안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청구자의 청구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 그 감면여부의 결정에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여지 즉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로서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활동이나 언론사 신문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자료 확보 수단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소명자료 제출 규정 신설(안 제6조 제3항)

- 안 제6조제3항은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신설하도록 규정하려는 바,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데 걱정할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면제) 생략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② 생략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어떤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할지는 개별 사안을 정형화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곤란한 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①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감면비율은 50~100%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수료 감면에 대한 소명자료인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